

라포르테 세종 분양권 전매(부부 공동명의) 안내

- 라포르테 세종은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소유권 등기 이전일까지 전매가 금지 됩니다.
- 주택법시행령 제73조4항7호에 의해 전매제한기간 내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동의를 통하여 분양권전매 (부부공동명의 등 관계법령에 정한 행위에 한하여)가 가능합니다.
- 건본주택에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 후 LH에 직접 방문하여 분양권 전매동의서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,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건본주택에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LH로 발송 및 동의서를 수령 후 후속 절차에 대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**중도금 대출 신청절차 이후 분양권 전매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세대의 경우 별도의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안내받으신 지정일에 재방문하시어 대출 승계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**
-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인 내방이 원칙입니다.
- 플러스옵션 추가계약 및 전매관련 서류는 각각 별도로오니 각각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분양권 전매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

순서	장소	구비서류	
		양도인	양수인
① 증여계약서 검인	부동산 소재지 (세종시청 토지정보과) 044-300-5617	공급계약서(원본), 증여계약서 인감도장, 신분증 ※ 증여계약서 당사 홈페이지 혹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비치	인감도장, 신분증
② 전매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	건본주택	공급계약서(원본), 증여계약서(검인) 인감증명서(부동산 매도용)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, 신분증	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(양도, 양수인 부부관계 입증)
③ 전매동의서 발급	시공사 대리 진행		
④ 권리의무승계란 작성	건본주택	인감도장, 신분증	인감도장, 신분증
⑤ 대출승계절차	건본주택 (추후 일정공지)	필요서류 별도 안내	필요서류 별도 안내
⑥ 분양계약서 수령	건본주택	계약자 신분증 (양도, 양수인) 및 계약서 보관증 (분출 지정일 수령)	

※ 유의사항

- 구비서류는 발급일 1개월 내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전매 신청(부부공동명의) 후 분양계약서 수령일까지 약 3주 내외 소요될 예정입니다.
-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대출, 세금, 민원, 기타 분쟁 등은 전적으로 양도,양수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
- 분양대금 미납금이 있거나(연체료, 플러스옵션 분양대금 포함), LH측의 전매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전매 (부부공동명의) 절차는 제한됩니다.
- **부부공동명의 진행 예정자께서는 반드시 당사 건본주택으로 사전 확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1600-7023)**